

Human Information

: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9)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제29차~30차)

제29차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제조에 대한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며,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하여야 하는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하도록 개선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27조제1항).
- 1) 안전인증 제도를 통하여 일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

하고 있으나 안전인증 대상 외의 많은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 설계·제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 2)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킴.
- 3) 안전한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계·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②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개선(안 제29조 제1항)

- 1)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③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안 제29조제8항)

1) 현행 법령상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나 청소 등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이 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함.

2)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④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안 제31조제2항,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 일용근로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의 이직 빈도가 높으므로 교육의 실효성이 낮음.

2)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함.

⑤ 유해 · 위험기계 등의 안전 관련 정보 종합관리(안 제36조의4)

1) 유해 ·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현황, 안전검사 이력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 · 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 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

⑥ 석면조사 의무 정비(안 제38조의2)

1) 현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법률과 고용노동부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화 된 석면조사 의무규정을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



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⑦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비치 의무주체 개선(안 제41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 등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입수할 수 있는 주체인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 주체와 그 의무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 뿐만 아니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제30차 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26조 생략